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법주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변종오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5년 5월 30일

나. 회부일자 : 2025년 6월 2일

3.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련하여 기축
시설,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함으로써
도민의 시설구축 부담 완화와 안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나. 충전시설 설치 수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5. 검토내용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충청북도의

기축시설* 및 현장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전용주차구역 및 급속충전시설의 설치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을 강화하려는 규정으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됨.

* (기축시설) 2022년 1월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 (안전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2098(2024.9.23.),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른 협조 요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기축시설 등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를 2026년 1월27일까지 유예 가능 및 시·도지사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이행을 협조.

나. 주요 내용 검토

- 전용주차구역 설치 예외기준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시설 철거가 예정된 경우와 함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6제2항제2호3)의 위임과 같이 관할 시장·군수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반영하여 타당하게 규정함.
- 또한, 급속충전시설 설치의무 적용 예외대상에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7제5항4)에 따른 기축시설은 관할 시장·군수가 급속충전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반영함으로써 정부정책을 적극 이행함.

3)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략)

2.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④ (생략) 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보급계획·운영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그 밖에 조문 내용은 상위법규에 위반되거나 침해하는 사항이 없고, 조례안 예고('25. 6. 2.~6. 7.)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6.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전용주차구역 및 급속충전시설 설치 적용 예외대상 확대에 관한 위임사항을 타당히 반영하였고,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에 따라 해당 시설구비 부담 완화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 집행부에서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 이후 해당시설 설치에 대한 현장 및 업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집행부 협의 등의 조례 개정 절차를 준수하였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